

구미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4. . .
발 의 자	김근한 의원

구미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김근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4. . .

발 의 자: 김근한 의원(1인)

찬 성 자: 김낙관·김민성·김정도·김춘남
소진혁·이상호·이지연·정지원
허민근 의원(9인)

1. 제안이유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녀의 발달단계별 맞춤형 양육환경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부모교육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부모교육의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제15조, 제16조, 제32조

2)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2조

나. 부서검토: 가족정책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구미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녀의 발달단계별 맞춤형 양육환경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 시행계획 수립 시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부모교육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부모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회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부모교육의 대상)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6.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
7. 학교폭력과 청소년범죄 개선 및 예방 등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

육

제7조(부모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2.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6. 가족의 양육·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8.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9.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10.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 ③ ~ ④ (생략)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2조(건강가정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③ (생략)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 ①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가족정책과

조 례 명	구미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p>□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 법령<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제15조, 제16조, 제32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2조 <p>□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과 정의(안 제1~2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부모교육의 대상 및 내용(안 제5~6조)○ 위탁 및 재정지원(안 제7~8조)○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9조) <p>□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의 부모교육 실시 규정과 관련,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녀의 발달 단계별 맞춤형 양육환경 구현을 위해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p>□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대효과: 부서별 수행하고 있는 부모교육의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부모교육 활성화에 기여○ 소요예산: 부모교육(0-2세) 실시에 따른 사업 보조로 연간 2천만원 소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문 제 점: 해당없음	

구미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7~8조(부모교육 위탁 및 재정지원) 내용에 따른 부모교육 비용 보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부모교육 관련 보조금 교부에 따른 소요예산이 1억 미만으로 추계됨
 - 찾아가는 가족(부모) 인식개선 교육
 - 2,000,000원 × 10개월 = 20,000,000원

4. 작성자

- 가족정책과 가족정책팀 이성민(☎054-480-6552)